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3.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3월 10일

나. 발 의 자: 임헌호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5년 3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3. 2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임헌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를 가진 구민에 대하여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해 줌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

○ 더 나아가 병역명문가, 장기복무제대군인 또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구민의 노고에 감사하고,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 추가(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의 반영,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대상 신설, 무료 접종으로 변경된 일부 유료 접종 종목을 삭제하여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2023.11.22.)으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1조 목적 규정에 해당 범규명을 추가하였으며, 별표의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에도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항목을 별도로 표기하여 상위법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안 제3조는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병역명문가 △장애인 등록자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기복무제대군인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20년→10년)을 통해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신설 항목의 관내 대상자 현황(2025.2월 말 기준)을 살펴보면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들은 950명(191가문), 관내 장애인 수는 14,719명(삼한장애 4,793/ 삼하지 않은 장애 9,926명)이며 타 서울시 자치구 중 과반수 이상의 자치구에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걸 고려하면 해당 규정 신설은 적합한 것으로 보임.
-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을 위해 국고가 투입된 백신을 확보한 경우 무료 접종하도록 하는 질병관리청의 권고사항('24년 1월)을 반영하여 별표의 유료접종 종목에서 삭제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

-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에서 수수료와 진료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

조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 목적 규정 및 별표에 상위법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과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비한 것은 타 자치구 조례입안 현황 및 감면 대상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권고로 이미 무료로 변경·운영되고 있는 접종 항목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는 일부 개정 필요성 또한 인정되므로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바, 본 조례안의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대상의 신설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3
----------	-----

발의연월일: 2025. 3. .

발의자: 임헌호, 정선희, 유승용
이성수, 남완현 의원(5인)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를 가진 구민에 대하여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해줌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
더 나아가 병역명문가, 장기복무제대군인 또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구민의 노고에 감사하고,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 추가(안 제3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5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4. 구강보건실 진료비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제3조제2항제8호 중 “20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별표 제1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진단항목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른다.

별표 제1호아목을 제1호자목으로 하고, 제1호자목을 제1호차목으로 하며, 제1호차목을 제1호카목으로 하고, 제1호카목을 제1호타목으로 하며, 제1호타목을 제1호파목으로 하고, 제1호파목을 제1호하목으로 하며, 제1호하목을 제1호거목으로 하고, 제1호거목을 제1호너목으로 하며, 제1호너목을 제1호더목으로 하고, 같은 란 제1호자.(종전의 제1호아.)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목에
‘파’목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별표에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3,000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	----	--------	---

별표 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란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1. (생략) 2.·3. 삭제 <신설> 4. (생략) <신설> 5. (생략) 6. 구강보건실 치료비 ③ (생략)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4. 구강보건실 진료비 2. (현행 제4호와 같음)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3. (현행 제5호와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
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
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
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
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

<신 설>

<신 설>

9. · 10.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8. -----

----- 10년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
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
담금

10.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
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1. · 12. (현행 제9호 및 제10호
와 같음)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가.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원	
	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원	
	다. 일반진단서	1통	500원	
	라.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마.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바.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원	
	사.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원	진단항목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른다.
	아.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3,000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자. 건강진단서	1통	3,000원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목에 ‘과’목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차. 사망진단서	1통	500원	
	카.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500원	
	타. 결핵진단서	1통	300원	
	파. 그 밖에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원	
	하.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거. 1통 초과 발급	1통	100원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너. X-선 의료영상 사본 발급	1매 (CD)	3,000원	
	더. 외국인 결핵확인서	1통	1,500원	
2. 유료접종	가. B형 간염 접종			
	1) 성인	1ml	4,000원	
	2) 소아	0.5ml	2,000원	
3. 검사	가. 간염검사			
	1) A형 간염검사	1회	16,000원	
	2) B형 간염검사	1회	6,000원	
	3) C형 간염검사	1회	3,000원	
	나.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다. 암표지자검사			
	1) AFP	1회	7,000원	
	2) CEA	1회	7,000원	
	3) PSA	1회	7,000원	
	4) CA125	1회	7,000원	
	라. 갑상선기능검사	1회	15,000원	
	마. 원스톱 건강검진	1회	9,000원	단,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수료의 50% 를 감면한다.
	바. 골밀도 검사	1회	8,000원	
4. 구강 보건실 진료비	불소도포 진료비	1회	해당연도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	단, 시술 상. 하악 당 1회로 산정한다.